#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윤희 의원 외 17명

나. 의안번호 : 제1300호

다. 제출일자 : 2016. 7. 19.

라. 회부일자 : 2016. 7. 21.

### 2. 제안사유

음수대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경미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 감면액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은 용역또는 자체적으로 음수대를 관리하고 있음.

한편 자체 관리보다는 용역을 통한 관리 시 지적률이 더 낮게 나오고 있고, 상당수 학교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 없이 음수대 유지관리를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음수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음수대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조제5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

나. 예산조치 : 비용 발생 없음

라. 기 타

1)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5. 검토의견

#### 가. 개요

 본 조례안은「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 요금 감면 대상 중 음수대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하는 경우 상수도사업본부가 용역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음수대를 관리해 주고 대신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현 황

○ 수돗물 음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아리수 음수대(이하 "음수대"라 함)를 설치하고 있으며, 사용 중인 정수기를 철거하고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1),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에 대하여 자체 음수대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확으로 수도요금을 20% 감면해 주고 있음.

또한, 음수대 설치와 청소 등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15.1.2)한 바 있음.

 현행 조례 제9조에서는 청소 등 위생관리와 단순한 고장 수리 등 유지 관리에 관한 조치는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지만, 냉온 기능 및 수압 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sup>1) 「</sup>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sup>1.</sup>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한편, 학교의 경우 음수대 위생관리와 유지관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전문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서 수행<sup>2)</sup>하고 있지만, 2015년 실시한 학교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결과 지적된 152대 중 자체 관리 146대(96%), 용역 관리 6대(4%)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 자체적으로 음수대를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결과 지적 현황)

(단위: 대)

구분	계	경미한 고장					중대한 고장			
		소 계	파우셋	버블러	버튼	기타	소 계	콤프레샤	냉각기	기타
전 체	152	116	41	12	59	4	36	8	25	3
자 체	146	112	37	12	59	4	34	8	24	2
용역	6	4	4	0	0	0	2	0	1	1

## 2) 음수대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안 제9조제5항 신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체 관리보다는 전문업체를 통한 용역 관리가 음수대 관리에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직접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설문조사<sup>3)</sup> 결과에서도 수도요금 감면 없이 음수대 관리를 상수도 사업본부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찬성 260개교, 반대 368개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반수 이상은 아니지만 상당수 학교에서 상수도 사업본부가 일괄적으로 음수대를 관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음.

일시: '16.1.8~1.29

대상 : 음수대 설치 및 수도요금 감면 대상 학교 628개교

<sup>2) 2015</sup>년 말 기준 자체 관리 778개교, 전문업체 관리 143개교

<sup>3)</sup> 내용 : 수도요금 20% 감면 없이 아리수 음수대의 유지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음수대 관리 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위임하기를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일선 학교의 요구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4)은 발생하지 않음.

<sup>4)</sup> 기존 학교 수도요금 감면액에 비해 용역 관리 비용이 적게 소요됨 학교 당 연간 수도요금 감면액(1,425천원/년) > 전문업체 용역 관리비(1,350천원/년)